

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48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5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폐지이유

가. 문민정부의 세계화 시책과 관련하여 파주시의 국제교류 및 세계화 추진과제 발굴 등의 기능을 담당할 목적으로 '96. 3. 1 파주시 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

나.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이 미미하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☐ 주요골자

“동조례 폐지”

파주시조례 제 호

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

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 [1996. 3. 1.] [조례 제32호]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세계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·관·산·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,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.

1.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2. 각 분야별 세계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
3.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
4. 지역주재 외국기관·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
5. 주민의 세계화 인식제고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
6. 기타 세계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 3 조(구성)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,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③회장은 부시장으로 하며, 부회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④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제 4 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해촉위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 5 조(직무)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
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기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 유지한다.

제 6 조(회의)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.

(추3)

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 조(소위원회)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제 8 조(협의조정사항의 처리)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한다.

제 9 조(자료의 제출등)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,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10 조(공청회등 개최)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 11 조(수당등)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,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12 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